

강의파견교수 임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의파견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의파견교수는 본교의 부설기관(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등)에 임용된 교원 중 전문성과 탁월성이 있는 분이거나 또는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과 학교의 필요에 따라 관련 교과목 개설이 되어 있을 경우 본교에서 강의 수행을 위한 업무를 위해 파견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 ① 강의파견교수의 임용은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조교수 이상의 자격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 ② 강의를 담당하는 강의파견교수의 특수한 교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각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학과장이 학과회의 등을 거쳐서 정해진 교과목으로 한다.

제4조(임용절차)

- ① 본교의 부설 기관(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등)에서 임용되어 강의수행의 목적을 위해 파견된 교원일 경우 부설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 ②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본교의 강의를 위해 파견될 경우 해당 교과목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 ① 강의파견교수의 임용기간은 강의를 위해 파견된 해당 학기 단위로 한다.
- 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6조(임무)

강의파견교수는 주당 최대 6시간 이내의 강의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 최대 9시간으로 한다.

제7조(처우)

강의파견교수의 강의료는 본교의 강의료 책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거 정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 및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